

	<h2>교육품질관리규정</h2>	규정번호	3-3-27
		제정일자	2015.11. 1.
		개정일자	2026. 3. 1.

제1조(목적) ①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 학칙 제40조의3에 의거 역량기반 교육과정 평가에 의한 직무역량 성취도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품질관리(CQI) 등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, 환류계획을 수립/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7.1.1. 2017.9.1., 2019.3.1., 2022.4.1.)

② 직무역량성취도 평가는 산업체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, 공통적이며,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보유한 수준을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9.3.1.)

제2조(평가영역) ① 평가영역은 학과별 전공 직무역량 및 대학 핵심역량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. (개정 2017.1.1., 2017.9.1., 2019.3.1., 2022.4.1.)

② 전공 직무역량의 평가는 학과별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과목별 능력단위의 행동지표, 지식, 기술, 태도 및 가치의 내용에 따른다. (개정 2017.1.1., 2019.3.1., 2022.4.1.)

③ 대학 핵심역량의 평가는 대학에서 규정한 역량군 및 그 하위역량에 따른다. (개정 2017.1.1., 2019.3.1., 2022.4.1.)

④ 삭제 <2019.3.1.>

⑤ 채용우대형 주문식 교육과정의 직무역량은 해당 교과목에 속한 능력단위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성취도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7.1.1. 2017.9.1., 2019.3.1., 2022.4.1.)

⑥ 교과목CQI는 학기 종료 후 실시하며, 학과/대학CQI는 당해 연도 교육과정 종료 후 실시한다. 각 CQI별 입력 및 검토에 대한 사항은 미래교육혁신센터 소관의 위원회 기능별로 검토/평가한다. (신설 2022.4.1., 개정 2025.3.1., 2026.3.1.)

제3조(위원회 운영) 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미래교육혁신센터 소관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(개정 2025.3.1., 2026.3.1.)

②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미래교육혁신센터운영규정에서 명시한다. (개정 2025.3.1., 2026.3.1.)

③ 기타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별도의 연구위원회(TF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제목개정 2017.9.1. 2019.3.1., 2022.4.1.]

[전문개정 2017.9.1., 2022.4.1.]

제4조 삭제 <2017.9.1.>

제5조(평가방법) ① 평가유형은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로 구분하며, 학과별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 도출된 교과목평가계획의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유형을 정한다. (개정 2017.9.1., 2019.3.1., 2022.4.1.)

② 평가방법은 대학 자체평가 방식으로 추진하되, 평가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학과역량교육과정위원회의 산업체 인사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. (개정 2017.9.1., 2019.3.1.)

③ 직무역량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과 및 대학의 교육품질관리(CQI)에 활용한다. (개정 2019.3.1.)

④ 평가방법의 절차 및 범위 등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매뉴얼을 따르며 역량교육정보 관리(시스템)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. (개정 2017.1.1., 2017.9.1., 2019.3.1., 2022.4.1.)

⑤ 직무역량평가는 교과목별로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19.3.1.)

⑥ 재학생의 교과목별 학습 이해도를 사전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진단평가를 실시하며, 그 결과를

분석 및 고려하여 직무역량평가를 실시한다. (개정 2017.1.1., 2022.4.1.)

⑦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성취수준 도달 기준은 교과목별 직무역량평가결과 평점 70%이상 (56점 이상)으로 한다. 단, 학과의 직무 특성 및 교과목의 적용 능력단위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 (신설 2017.1.1., 2019.3.1., 2022.4.1.)

제6조 삭제 <2017.9.1.>

제7조(직무역량성취도 향상) ① 학과는 직무역량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매 학년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향상시켜야 할 대상을 전공 직무역량, 대학 핵심역량으로 정의하고, 산업체 현장 전문인재 양성, 그에 따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과정 개(편)발, 과정 운영 및 평가, 개선 및 표준화 방안 등이 포함된 직무역량성취도 향상 및 심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
(개정2017.1.1., 2019.3.1., 2022.4.1.)

② 영역별 직무역량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, 과정 운영 및 평가,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9.1., 2019.3.1.)

[제목개정 2019.3.1.]

제8조(운영세칙) 직무역량성취도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미래교육혁신센터 소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 (개정 2019.3.1., 2022.4.1., 2025.3.1., 2026.3.1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목개정 적용례) 이 규정의 규정명을 ‘교육품질자체평가규정’에서 ‘교육품질관리규정’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